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1229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가. 원고는 2015. 9. 16. [redacted]시 [redacted]구 B, C, D, E, F, G, H, I, J, K, L, M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4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강학상 개념에 의하여 원시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어떤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별도의 등기 없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경매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않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또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의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취지 참조).

2) 민법에서 '원시취득'은 '어떤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승계취득'은 '이미 발생한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각 의미하므로, '승계취득'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나 제한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않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등이 소멸되기는 하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 제268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제한이 모두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던 제한 등을 승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단지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경매를 통해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에서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

4) 게다가 원시취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끝.